

# 서울특별시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9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4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으로,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임.
- 나.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(구 영등포수도사업소)
- 시설규모 : 213.88㎡ (지하층 97.3㎡, 4층 116.58㎡)
  - 지하층(쉼터, 교육실), 4층(사무공간, 상담실, 회의실)

## 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6. 7. ~ 2019. 7.)
- 운영사업(센터의 기능)
  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
  -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·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  -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'16년 예산액('16.7월~12월) : 185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 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및 제11조(운영의 위탁)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센터의 운영은 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, 인식개선, 권익옹호, 기능강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따라서,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[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(2016.1.7.시행)]

#### 제9조(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16년 예산(185백만원) 확보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보호팀 정태영 (☎ 2133-7427)